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12월 8일 박종국 의원 등 22인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12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23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05년 12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 종 국 의원)

□ 제안이유

○ 노인복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8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안 제2조)

○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부천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정함.(안 제3조)

○ 장수수당 지급액은 1인당 월 2만원으로 함.(안 제4조)

○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동장은 거주 및 수급 자격 여부

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확정 후 매월 5일한 시장에게 장수수당 지급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5조)

○ 장수수당 자격을 득한 후 신청한 노인이 매월 1일 기준으로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매월 15일에 지급하도록 함.(안 제6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장수수당 지급조례가 전국적으로 몇개 시군이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 전국적으로 조사는 못했으나 참고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울산, 성남, 서산 등 9개 곳을 비롯한 구례군이 월 5만원, 보성군이 3만원 등 다수의 시군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조례안이 한번 제정되면 개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번 조례 제정시 지급대상을 80세부터 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80세도 검토를 해보았으나 부천시의 경우 85세 이상 인구가 2,661명으로 예산이 6억 3천만원 정도 소요되나 80세 이상 인구로 하면 7,420명으로 예산이 17억 8천만원 정도 소요되어 재정부담이 크고 대상나이를 하향조정하는 것은 쉬우나 상향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85세로 하였습니다.
○ 장기출타자나 국외이주자 제외한 주민등록상 거주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분들을 위해 부칙이나 세칙을 만들어서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 안 9조에 자세한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동 사무소의 사회복지사가 현황 파악을 통해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확인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매월 장수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시 세수전망이 어렵고 불투명한데 복지정책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 현재 고령화 추세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며 장수수당 지급도 노인복지 일환으로 실시하는 곳이 늘어나는 경향입니다.
○ 관내 요양원이 많이 있는데 요양원에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해볼 의향은 있는지?	○ 요양원에 있으려면 주소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 시행규칙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471호
의결 년월일	2005. 12. 23 (제123회)

발의년월일 : 2005년 12월 8일

발 의 자 : 박종국 의원 외 22인

1. 제정이유

○ 노인복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8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안 제2조)

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부천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정함.(안 제3조)

다. 장수수당 지급액은 1인당 월 2만원으로 함.(안 제4조)

라.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동장은 거주 및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확정 후 매월 5일한 시장에게 장수수당 지급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장수수당 자격을 득한 후 신청한 노인이 매월 1일 기준으로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매월 15일에 지급하도록함.(안 제6조)

□ 참고자료

1. 장수수당 지급 기관 현황

시군명	지급대상	거주기간	지급금액	조례제정
성남시	90세이상	1년 이상	월 30,000원	2005.10.28
서산시	85세이상	1년 이상	월 20,000원	2004.12.30
계룡시	80세이상	제한없음	월 20,000원	2004. 8.30
양주시	80세이상	〃	월 20,000원	2005. 4. 8
제주도	80세이상	〃	월 20,000원	2004. 1.20
울산북구	90세이상	〃	월 20,000원	2004.12.13
울산울주군	85세이상	〃	월 20,000원	2005. 7.28

2. 부천시 연령대별 인구 현황(2005. 10. 30일 현재)

연령별	총인구수	80세이상(비율)	85세이상(비율)	90세이상(비율)
인구수(명)	854,180	7,420(0.86%)	2,661(0.31%)	692(0.08%)

3. 예산수반사항

○ 장수수당 지급시(월 20,000원 기준)

· 85세 이상 지급시

- 20,000원 × 2,661명 × 12월 = 638,640천원

※ 80세 및 90세 이상 지급시 예산소요 현황

· 80세 이상 지급시

- 20,000원 × 7,420명 × 12월 = 1,780,800천원

· 90세 이상 지급시

- 20,000원 × 692명 × 12월 = 166,080천원

부천시 조례 제　　호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8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시기) ①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부천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다만, 장기출타자・국외이주자는 제외한다.

②지급시기는 만 8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한다.

제4조(지급액 및 지급기준) ①장수수당의 지급액은 월 2만원으로 한다.

②장수수당은 만85세가 지난 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수당을 신청한 다음달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③장수수당은 수급자가 사망 및 말소 등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지급중지사유가 발생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수당의 신청) ①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동장은 거주 및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확정 후 매월 5일한 시장에게 장수수당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수당을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

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자(위임장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수당지급결정 및 지급) 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수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장수노인의 실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장수수당은 매월 지급하되,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1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부천시 관할 구역 외로 전출하였거나 말소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 더 이상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 될 때
2. 수혜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장수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4.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

제8조(대장 등 비치)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사항) ①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세부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본 조례의 지급대상자 및 지원기준은 부천시의 예산 규모와 사업의 성과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에 의한 사업은 2006. 7. 1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전화 번호	
	주 소					
수당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부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수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천 시 장 귀하

※계좌번호 확인이 필요하오니 통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 서식】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연 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급결정일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